

2026년 청정공정 확산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산업통상부에서는 청정생산기술 적용을 통한 환경개선과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할 중소·중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, 희망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을 바랍니다

2026년 7월 6일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중소기업 청정공정 확산사업
(과제명 : 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·보급 기반구축)
 - 사업기간 : 2026. 8. ~ 2026. 12. (6개월)
 - 주최 및 주관 : 산업통상부(소관부처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전문기관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(주관연구개발기관)
 - 사업 추진방법
 - 추진절차 : 기업초기진단 → 정밀진단 → 개선(안) 도출 및 제안 → 개선 실행 (청정공정 기술·설비 도입) → 개선성과 확인·검수
- ※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실시

2 지원내용

- (공정 진단) 중소·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

< 청정공정기술 적용 프로세스 및 역할 >

	1단계 기업 초기진단	2단계 사업장 진단	3단계 개선(안) 도출	4단계 개선 실행
기업	· 기업 기본정보 제공	· 자체 문제점 및 개선안 공유	· 진단팀의 개선 제안사항 검토	· 개선안 실행을 위한 설비 등의 투자*
진단팀	· 경영현황 및 환경데이터 수집 · 기업 애로 파악 · 중점 진단공정 파악	· 중점 대상 공정 정밀진단	· 적용타당성 및 투자회수기간* 분석을 포함한 청정공정기술 적용방안 도출	· 개선안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

- ※ 진단팀은 2년 이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공정개선 기술을 우선 제시하며, 기업은 제안된 기술의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(설비 보급)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사업장 내 맞춤형 청정공정 적용기술 도입

- ※ 모든 참여업체에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, 기술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·설비에 대해서만 지방비를 보조할 예정임

3 지원규모

- (공정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: 컨설팅) 전액(10백만원) 국비 지원
- ※ 규제·탄소·자원·화학물질 등 기업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청정생산 컨설팅 추가 지원

4 신청자격 및 조건

-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 (대기업은 참여제한)
 -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이상이며, 환경오염 다배출공정 보유 사업장을 우선으로 함
- 사업장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,000TOE(Ton of Oil Equivalent) 미만 기업만 가능
(에너지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제한)
- 타 사업에 선정되어 청정생산분야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중복 지원은 제한함
- 본 사업은 연속 2년까지 참여 가능함 (단, 신규참여기업 우대)
-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단내 기업 우대
 - (2024 지정) 전남(광남 국가산업단지 등 4개 단지), 인천(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등 4개 단지), 부산(신평·장림 일반산업단지)
 - (2025 지정) 강원(후평일반산업단지 등 11개 단지), 경남 (사천일반산업단지 등 8개 단지), 전북 (전주일반산업단지 등 4개 단지)
 - (2026 지정) 충남(아산부곡국가산업단지 등 5개 단지), 충북 (충주제1일반산업단지 등 5개 단지), 경남 (마산자유무역지역국가산업단지 등 4개 단지)
- 본 사업의 참여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지자체 내 소재한 기업 우대
 - * 부산, 대구, 광주, 인천, 울산, 충북, 안산, 영천, 청주, 성남, 장흥

5 사업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

- 신청서 접수 기간 : ~ 2026년 8월 5일 (18:00까지)
 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E-mail 통한 신청 불가능)
- 접수처 : <http://www.cppms.kr/cppms> (청정공정 확산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)
- 제출 서류
 - 1) 사업 참여신청서 (붙임 1)
 - 2) 참여 희망분야 조사서 (붙임 2)
 - 3) '25년 재무상태표 (기업 매출액 확인용이며, 붙임 3으로 대체 가능)
 - 4) 사업자등록증 (기업소재지 및 제조업종 확인용)
 - 5)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(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만 제출)
 - 6) 기타서류 (기타 필요시 제출)

6 선정평가

- 신청서접수 → 서류심사 → 최종선정 및 진단팀 매칭(선정위원회) → 통보
 - ※ 평가기준 : 참여 적합성(청정생산 기술도입 필요성, 개선이행 의지, 성과 잠재력 등)

7 문의처

- 담당자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(02-2183-1567)